

##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557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가 2009년 7월 8일 국무원 제73차 상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었으며 현재 공표한다.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  
2009년 7월 20일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제1장 총 칙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제2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법에서 규정된 직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식품안전 감독 관리능력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감독관리업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처의 협조 시스템과 식품안전 정보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식품안전 정보와 식품검사 등의 기술적 자원을 공유한다.

#### 제3조

식품생산관리자는 법 규정과 식품안전표준에 의거 생산관리에 종사하며 완비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해 식품안전을 보증해야 한다.

식품생산관리자는 생산 관리한 식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회와 대중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회적 책임을 진다.

#### 제4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는 식품안전법과 해당 조례에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정보를 공표하여 대중이 문의, 고발,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회사나 개인이든 관련부처를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

##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 제5조

식품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계획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국무원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 국무원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등 부처와 함께 식품안전 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의 제정 및 수정, 식품안전감독관리 등의 업무에 대한 필요에 의해 제정했다.

####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는 반드시 동등한 등급의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등의 부처를 조직하여 식품안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방안을 제정하고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에 서류 등록을 신고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처는 서류등록상황을 국무원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 국무원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등 부처에 통보한다.

#### 제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처는 관련부처와 함께 식품안전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계획에 대해 조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구에 보고한 관련 질병 정보에 근거하여 국가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계획을 조정한다.

국가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계획을 조정한 이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 정황과 결합하여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계획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 제8조

의료기구가 접수한 환자가 식품으로 인한 질병에 걸렸거나 식중독 환자임을 발견한 경우 또는 그러한 의심환자임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각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에 관련 질병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위생행정부처는 관련 질병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즉각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상급 위생행정부처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직접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에 보고할 수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위생행정부처에도 동시에 보고할 수 있다.

#### 제9조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작업은 성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가 동등한 등급의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 등 부처와 함께 확정된 기술기관이 책임진다.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작업을 담당하는 기술기관은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계획과 모니터링방안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증해야 한다.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계획과 모니터링방안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 결과를 성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하달한다.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인원은 샘플 채취와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관련된 식용농산품 재배지, 식품 생산지, 식품유통장소, 요식서비스장소에 진입할 수 있다. 샘플 채취를 할 경우 반드시 시장가격으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 제10조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 분석결과 식품안전 상에 위험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는 즉각 관련 정보를 본 행정구역의 시급, 현급 인민정부와 해당 위생행정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 제11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처는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데이터와 분석결과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국무원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 국무원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등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처는 반드시 식품안전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1)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수정하기 위해 제공한 과학적 증거에 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 (2) 관리 감독할 중점분야, 중점품종을 확정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 (3) 식품안전위험을 야기할 새로운 요소가 발견된 경우
- (4) 어떠한 요인이 식품안전위험을 야기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상황

#### 제13조

국무원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 등 관련 부처가 식품안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에 식품안전 위험평가 건의를 제출하고 아래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만 한다.

- (1) 위험요소의 출처와 성질
- (2) 관련 검사데이터와 검사결론
- (3) 위험요소의 연관 범위
- (4) 기타 관련 정보와 자료

현급 이상 지방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 등 관련 부처는 반드시 앞의 조항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위험평가정보와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 제14조

성급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 농업행정부처는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위험 모니터링 관련 정보를 즉각 상호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 농업행정부처는 식품안전 위험평가결과와 식용농산품 품질안전 위험평가결과 등 관련 정보를 즉각 상호 통보해야 한다.

### 제3장 식품안전표준

#### 제15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처는 국무원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 국무원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등 부처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해당 실시계획을 제정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해당 실시계획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16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처는 상응하는 기술력을 갖춘 조직을 선택하여 식품안전국가표준 초안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기관, 교육기관, 학술단체, 업계 협회로 표방되는 조직과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 초안을 공동 작성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초안을 대중에 공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17조

식품안전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책임지고 조직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 심사평가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과 실용성 등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 제18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는 기업이 식품안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 등록된 기업의 표준을 보고해야 하며 동등한 등급의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등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 제19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는 동등한 등급의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등 부처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과 식품안전지방표준의 집행상황에 대해 각각 추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식품안전표준을 수정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 상무부, 공업신식화부 등 부처는 식품안전표준의 집행과정 중에 존재하는 문제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즉각 동등한 등급의 위생행정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관리자, 식품업계협회는 식품안전표준의 집행과정 중에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즉각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장 식품생산관리

#### 제20조

식품생산기업을 설립하려면 기업명칭을 사전에 심사 승인 받아야 하며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현금 이상 품질감독관리부처는 관련 법, 행정법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생산장소를 조사하며 관련 제품을 검사한다. 관련 자료와 장소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관련 제품이 식품안전표준 또는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를 결정한다.

기타 식품생산관리자는 법에 의거 관련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요식서비스허가를 취득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식품생산가공용 소규모 작업장과 식품노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식품생산허가, 식품유통허가, 요식서비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제21조

식품생산관리자의 생산관리조건에 변화가 생겨 식품생산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각 수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잠재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 식품생산 활동을 중단하고 소재지 현금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새로 허가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진행한다.

현금이상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관리자의 생산관리활동에 대한 일상감독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식품안전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발견된 경우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생산관리 허가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폐기한다.

#### 제22조

식품생산관리기업은 식품안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직원이 식품안전지식훈련에 참가하도록 하여 식품안전법 규정, 표준, 기타식품안전지식을 학습하고 훈련파일을 작성하도록 한다.

#### 제23조

식품생산관리자는 식품안전법 34조의 규정에 따라 종사인원의 건강조사와 건강파일등록제를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식품을 들여오는 작업에 직접 접촉하는 인원이 이질, 장티푸스, A형간염, E형간염 등 소화기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유지에 지장이 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식품생산관리자는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 직위로 조정해 주어야만 한다.

식품생산관리인원은 식품안전법 제34조 두 번째 문단의 규정에 따라 건강조사를 실시하며 조사항목 등 사항은 반드시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부합해야만 한다.

#### 제24조

식품생산관리기업은 식품안전법 제36조 두 번째 문단, 제37조 첫 번째 문단, 제39조 두 번째 문단의 규정에 따라 입하물품조사기록제, 식품출고검사기록제를 수립하며 법에서 규정하는 기록해야 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관련 정보가 기재된 입하 또는 판매 영수증을 보유한다. 기록과 영수증의 보존기한은 2년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 제25조

원료를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는 식품생산그룹은 기업의 본사가 물품공급업자의 허가증과 제품합격증명서류를 일괄 조사하고 매입물품에 대한 검사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합격증명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식품원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표준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 제26조

식품생산기업은 원료검수, 생산과정에서 안전관리, 저장관리, 설비관리, 불합격제품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제를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식품안전보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완비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제27조

식품생산기업은 아래의 사항에 대해 통제요구사항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출고되는 식품이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 (1) 원료구매, 원료검수, 원료투입 등 원료에 대한 통제
- (2) 생산절차, 설비, 저장, 포장 등 생산주요단계에 대한 통제
- (3) 원료검사, 반제품검사, 완제품 출고검사 등 검사에 대한 통제
- (4) 운송, 교부에 대한 통제

식품생산과정에서 통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경우 식품생산기업은 즉각 원인을 밝히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8조

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법 제3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하물품검사기록과 식품출고검사기록을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식품 생산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정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의 보존기한은 2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 제29조

식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은 반드시 도매식품의 명칭, 규격, 수량, 생산 로트번호, 보존기한, 구매자명, 연락처, 판매일자 등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록되거나 관련 정보가 기재된 판매영수증을 보유해야 한다. 기록과 영수증의 보존기한은 2년 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 제30조

국가는 식품생산관리자가 선진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식품안전법과 해당 조례가 요구하는 기록해야 하는 사항들을 기록한다.

#### 제31조

요식서비스제공자는 원료구매의 통제요구사항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구매한 원료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요식서비스제공자는 가공제작과정 중에 가공 대기중인 식품과 원료를 검사하고 부패, 변질, 기타 감각기관으로 이상이 감지된 경우 가공 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32조

요식서비스제공기업은 정기적으로 식품가공, 저장, 진열 등의 설비와 시설을 유지 보수해야 하며 보온설비와 냉장, 냉동설비를 정기적으로 세척, 체크, 교정해야 한다.

요식서비스제공자는 요구사항에 따라 식기, 음료용기 등을 세척하고 소독하며 세척과 소독을 하지 않은 식기와 음료용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33조

식품안전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리콜된 식품에 대해 식품생산자는 무해화 처리 또는 소각처리를 하여 재차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라벨, 표식, 설명서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리콜된 식품에 대해 식품생산자는 보완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다. 판매할 때 반드시 소비자에게 보완조치에 대해 명시해야만 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리콜한 정황, 식품관리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경영을 중단한 정황을 식품생산관리자의 식품안전신용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 제5장 식품검사

### 제34조

신청인은 식품안전법 제60조 3번째 문단의 규정에 의거 재검사 작업을 담당하는 식품검사기관(이하 '재검사기관'라 함)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검사기관 리스트는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위생행정부, 농업행정부 등 부처가 공동으로 공표한다. 재검사기관이 발급한 재검사결과가 최종검사결과이다.

재검사기관은 재검사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재검사기관은 최초검사기관과 동일한 기관이어서는 안 된다.

### 제35조

식품생산관리자는 식품안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 표본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를 신청했고 재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재검사비용은 표본검사를 실시한 부처에서 부담한다.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재검사 비용은 식품생산관리자가 부담한다.

## 제6장 식품수출입

### 제36조

식품을 수입한 수입업체는 계약서, 영수증, 화물명세서, 선하증권 등 필요한 증빙과 관련 승인문건을 구비하고 세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를 한다. 수입식품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 합격을 받아야만 한다. 세관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세관증명에 근거하여 통과를 허가한다.

### 제37조

아직까지 식품안전국가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식품 또는 최초로 수입한 식품첨가제 신제품, 식품관련 제품 신제품의 경우 수입업체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에 식품안전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허가증명문건을 제출하고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다.

### 제38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처가 수입식품에서 식품안전국가표준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인체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였다면 식품안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 제39조

중국으로 수입된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식품안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진행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다. 이미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이 허위자료를 제공하였거나 해외식품생산기업 측의 사유로 관련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처는 등록을 철회하고 이를 공고한다.

### 제40조

수입한 식품첨가제에는 반드시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식품안전법과 중국 기타 관련법, 행정법의 규정과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만 하며 식품첨가제의 원산지와 중국 대리업체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식품첨가제에 중문라벨, 중문설명서가 없거나 라벨, 설명서가 본 조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입해서는 안 된다.

### 제41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식품안전법 제62조에 의거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식품안전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해 감독,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제정한다.

### 제42조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처는 정보수집네트워크를 수립하고 식품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정보를 수집, 종합, 통보한다.

- (1)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수출입식품에 대해 검사검역을 실시하여 발견한 식품안전 정보
- (2) 업계 협회, 소비자를 반영한 수입식품 안전정보
- (3) 국제조직, 해외정부기관이 발표한 식품안전정보와 위험예고정보, 그리고 해외업계협

회 등 조직과 소비자를 반영한 식품안전정보  
(4) 기타 식품안전정보  
통보를 받은 부처는 필요할 경우 상응하는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는 알게 된 수출입식품안전과 관계된 정보를 즉시 국가 출입국 검사검역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장 식품안전사고처리

제43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조직은 식품안전 사고를 유발했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 원료, 도구, 설비 등을 즉각 봉인하는 등의 통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이후 2시간 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44조  
식품안전사고조사는 사실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고의 성격과 원인을 즉시, 정확히 밝혀내어 사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제시한다.

식품안전사고조사에 참여한 부처는 위생행정부처의 일괄 안배 하에서 분업과 상호 협력하여 사고 조사처리의 작업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처리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처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제45조  
식품안전사고조사에 참여한 부처는 관련 조직과 개인을 통해 사고 관련 정황을 이해할 권한이 있으며 관련 자료와 샘플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조직과 개인은 식품안전사고조사처리작업에 협조해야 하고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와 샘플을 제공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처리를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 제8장 감독관리

제47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법 제7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식품안전 연간감독관리계획에는 식품 표본추출검사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영유아, 노인, 환자 등 특정인원에게 전문적으로 제공되는 보조식품은 반드시 표본추출검사를 중점 강화해야만 한다.

현급이상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식품안전 연간감독관리계획에 따라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표본추출검사용 샘플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검사비 등은 동급 재정기관에서 지출한다.

제48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급 위생행정부,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을 일괄 조직하고 협조시키며 법에 의거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관리자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비교적 높은 식품생산관리자에 대해서는 감독관리를 중점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식품안전 위험경계정보를 발표하거나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처가 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통보한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정보를 접수한 이후 시급, 현급 인민정부는 즉각 본급 위생행정부,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를 조직하여 목적성 있는 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만 한다.

제49조  
국무원 위생행정부처는 질병정보와 감독관리정보 등에 근거하여 식품 중에 식용이 아닌 화학물질과 기타 인체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첨가되었거나 첨가될 가능성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질의 리스트와 검사방법을 공개한다. 국무원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상응하는 감독관리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제50조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식품안전 감독관리작업을 진행하며 국무원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가 인정한 빠른 검사방법을 채택하여 식품에 대한 초기 단계의 걸러내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초기 조사결과 식품안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60조 3번째 문단의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초기 조사결과는 법적근거로 보지 않는다.

#### 제51조

식품안전법 제82조 2번째 문단에서 규정하는 식품안전 일상감독관리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식품안전법에 의거 행정허가를 실시한 정황
- (2) 생산관리 중단 명령이 내려진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제품의 리스트
- (3) 식품생산관리상의 위법행위 조사와 처리 정황
- (4) 처리작업 전문 조사 정황
- (5) 법률과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기타 식품안전 일상감독관리 정보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정보 가운데 2개 이상이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처의 직무와 연관되는 경우 관련 부처가 함께 공표한다.

#### 제52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처는 식품안전법 제82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고 동시에 관련 식품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해석하고 설명해야 한다.

#### 제53조

위생행정부,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 등의 부처는 본 조항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문의,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문의, 고발, 신고에 대해 식품안전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답변, 대조, 처리하고 문의, 고발, 신고와 답변, 대조, 처리 정황에 대해 기록하고 보존한다.

#### 제54조

국무원 공업신식화부, 상무부 등 부처는 직책에 따라 식품업계의 발전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산업구조 최적화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식품업계의 신용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여 식품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 제9장 법적책임

#### 제55조

식품생산관리자의 생산관리조건에 변화가 생겨 본 조항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경우 관련 주관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된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56조

요식서비스제공업자가 본 조항 제31조 1번째 문단의 규정에 따라 원료구매의 통제요구사항을 제정하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요식서비스제공업자가 본 조항 제31조 2번째 문단의 규정에 따라 가공 대기중인 식품과 원료를 조사하지 않았거나 부패, 변질이 발견되었거나 기타 감각기관으로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가공 또는 사용한 경우 식품안전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57조

아래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1) 식품생산기업이 본 조항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제를 수립하고 집행하지 않은 경우
- (2) 식품생산기업이 본 조항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과정에 대해 통제 요구사항을 제정하고 실시하지 않았거나 식품생산과정에서 통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나타났으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3) 식품생산기업이 본 조항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과정의 안전관리정황을 기록하지 않았거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4) 식품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본 조항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정보를 기록 또는 보존하거나 판매영수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5) 요식서비스제공기업이 본 조항 제32조 첫 번째 문단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설비와 시설을 유지보수, 세척, 체크, 교정하지 않은 경우
- (6) 요식서비스제공자가 본 조항 제32조 두 번째 문단의 규정에 따라 식기, 음료용기를 세척하고 소독하지 않았거나 세척과 소독을 하지 않은 식기와 음료용기를 사용한 경우

#### 제58조

본 조항 제40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첨가제를 수입한 경우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불법으로 수입한 식품첨가제를 몰수한다. 불법으로 수입한 식품첨가제의 현금가치가 1만원 미만인 경우 2,000위안 이상 5만원 미만인 벌금에 처한다. 현금가치가 1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가치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의료기구가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질병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위생행정부처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제60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조직이 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1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식품안전감독관리의 법정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본 행정구역에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무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인원에게 중과실 기록, 계급강등, 해직, 제명 등의 처분을 내린다.

현급이상 위생행정부, 농업행정부, 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 기타 관련 행정부처가 식품안전감독관리의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상감독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거나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에 의거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주무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인원에게 중과과실 기록 또는 계급강등의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악영향을 조성한 경우 직위해제 또는 제명 등의 처분을 내린다. 주요 책임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직해야 한다.

**제10장 부 칙**

제62조 본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식품안전위험평가란 식품과 식품첨가제 중에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이 있어 인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진행하는 과학적 평가를 말하며 위해식별, 위해특징묘사, 노출평가, 위험특징묘사 등이 포함된다.

요식서비스란 가공, 판매, 노동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소비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활동을 말한다.

**제63조**

식용농산품 품질안전위험모니터링과 위험평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부처가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품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국경과 항구에서의 식품의 감독관리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식품안전법, 본 조례, 관련법, 행정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특정한 보건기능을 갖추었다고 언급되는 식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64조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